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100555-10



2026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Education for Improving
Disability Awareness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각 급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안내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CONTENTS

▶ 2026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iii
제1장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	1
1. 기본 개요	3
1) 관련 근거	3
2) 교육 목적	3
3) 교육 연혁	3
4) 장애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활용	5
2. 추진 체계	5
3. 법적 주요 내용	6
4.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 의무대상 기관 기준	7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유형(A)>	8
2) 각 급 학교<유형(B)>	10
3) 어린이집·유치원<유형(C)>	10
4) 법정 의무대상기관 기준표	11
제2장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실적제출	13
1. 교육 실시 운영 방향	15
1) 교육대상 및 시간	15
2) 교육내용 및 방법	15
3) 교육 실시 및 실적 제출	16
4) 교육실적 점검 및 후속조치	17
2. 기관유형별 실적배점표	18
1)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유형(A)>	18
2)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유형(B)>	19
3)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유형(C)>	20
3. 교육 실시 세부 이행사항(1, 2, 3, 4단계)	21
1) (1단계) 교육계획 수립	21
2) (2단계) 교육 참여	21
3) (3단계) 교육 방법 및 활용	22
4) (4단계) 교육가점	25

4. 후속 조치-----	26
1) 후속 조치 세부일정-----	26
2) 교육실적 점검 및 부진기관 선정-----	26
3) 부진기관 대상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27
4) 교육실적 최종결과 언론 공표-----	27
5. 기타사항-----	28
1) 부실교육 주의 안내-----	28
2) 교육 관련 허위 홍보·안내 전화 대응-----	28
제3장 전문강사 및 지정기관-----	29
1. 전문강사 양성 및 운영-----	31
1) 전문강사 자격-----	31
2) 전문강사 양성-----	31
3) 보수교육 및 유예제도-----	31
4) 전문강사 관리-----	32
2.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32
1) 지정기관 자격 및 역할-----	32
2) 지정 절차 및 기준-----	33
3) 지정 변경-----	34
4) 지정 취소-----	34
5) 점검 및 평가-----	34
3. 전문강사 및 지정기관 활용-----	35
1) 전문강사 및 지정기관 현황-----	35
2) 교육의뢰 및 활용-----	35
제4장 장애인식개선교육 자주 묻는 질문-----	37
1. 교육 대상-----	39
2. 교육실시 및 방법-----	41
3. 실적 제출 및 인정사항-----	44
4. 실적관리시스템-----	47
제5장 참고자료-----	49
1. 지정기관 현황-----	51
2.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령-----	53
3. 각종 서식-----	59
4. 장애인식개선 브랜드·캐릭터-----	66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5년	2026년																								
법정의무대상 기관 유형 명칭 (8p)	(유형A) 공직유관단체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유형A)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교육대상 인원 (21p, 39p)	교육대상 전체인원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관에 소속된 인원 총 수로 계산	교육대상 전체인원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관에 소속된 인원 총 수로 계산 * 대학교의 경우, 2026년 4월 1일 대학정보공시 기준에 준용하여 산정 가능																								
교육가점 대면교육 참여율 (25p)	<p>대면교육 참여 가점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가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교육 참여</td> <td>50% 이상</td> <td>5점</td> </tr> <tr> <td>30% 이상 ~ 50% 미만</td> <td>4점</td> </tr> <tr> <td>10% 이상 ~ 30% 미만</td> <td>3점</td> </tr> <tr> <td>10% 미만</td> <td>0점</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가점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교육 참여	50% 이상	5점	30% 이상 ~ 50% 미만	4점	10% 이상 ~ 30% 미만	3점	10% 미만	0점	<p>대면교육 참여 가점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h>가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교육 참여율</td> <td>50% 이상</td> <td>5점</td> </tr> <tr> <td>30% 이상 ~ 50% 미만</td> <td>4점</td> </tr> <tr> <td>10% 이상 ~ 30% 미만</td> <td>3점</td> </tr> <tr> <td>10% 미만</td> <td>0점</td> </tr> </tbody> </table> <p>※ 대면교육 참여율 = (대면교육 참여 인원 ÷ 기관 전체 교육대상 인원) × 100 (기관 전체 교육대상 인원 중 대면교육에 실제 참여한 인원의 비율)</p>	구분	내용	가점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교육 참여율	50% 이상	5점	30% 이상 ~ 50% 미만	4점	10% 이상 ~ 30% 미만	3점	10% 미만	0점
구분	내용	가점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교육 참여	50% 이상	5점																								
	30% 이상 ~ 50% 미만	4점																								
	10% 이상 ~ 30% 미만	3점																								
	10% 미만	0점																								
구분	내용	가점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교육 참여율	50% 이상	5점																								
	30% 이상 ~ 50% 미만	4점																								
	10% 이상 ~ 30% 미만	3점																								
	10% 미만	0점																								
전문강사 및 지정기관 활용 (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강사 및 지정기관 안내 - 전문강사 찾기 및 교육의뢰 방법 - 지정기관 찾기 및 교육의뢰 방법 	<통합> 전문강사 및 지정기관 활용																								



제1장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

-
1. 기본 개요
 2. 추진 체계
 3. 법적 주요 내용
 4.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 의무대상 기관 기준
-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 목차

1. 기본 개요	3
1) 관련 근거	3
2) 교육 목적	3
3) 교육 연혁	3
4) 장애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활용	5
2. 추진 체계	5
3. 법적 주요 내용	6
4.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 의무대상 기관 기준	7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유형(A)>	8
2) 각 급 학교<유형(B)>	10
3) 어린이집, 유치원<유형(C)>	10
4) 법정 의무대상기관 기준표	11



제1장 ◉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요

1 기본 개요

1 관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3~5

2 교육 목적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 증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회 조성

3 교육 연혁

-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의무 규정
- (2015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2016.6.30. 시행)
 - 교육 의무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대학교(대학원 포함), 특수학교, 각종 학교로 확대
 - 교육 내용, 교육 방법과 교육 실시 후 결과 제출 명시

- (2017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오픈
 - 법정 교육의무대상의 실적 입력 및 관리, 강사 조회, 교육자료 등의 기능
- (2019년)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오픈
 - 개인별 회원가입을 통한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이수증 발급 기능
- (2019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2021.6.4. 시행)
 - 교육 실시결과 점검에 따른 부진기관 대상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장애인식개선교육 기관 지정·위탁, 전문강사제 도입, 점검 결과의 각종 평가 반영 등
- (2021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6.4. 시행)
 -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방법, 특별교육 실시 기준, 언론공표 방법, 인식개선교육 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
- (2021년) 교육 강사·기관 전용시스템 오픈
 - 전문강사·지정기관 모집, 정보관리 및 세부 실적관리 기능
- (2021년) 장애공감주간 운영(이후 매년 운영)
 - ‘세계 장애인의 날(12/3)’을 기념하며,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함께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장애공감주간 프로그램 운영
- (2021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2022.6.22.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제거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 광고 등 홍보영상 제작·배포
-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및 후속 조치 시행(이후 매년 시행)
 - 연도별 교육실적 점검에 따른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교육 필수 실시(2021.6.30. 시행) 반영
-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부진기관 대상 언론공표 실시(이후 매년 공표)
- (2024년) 제1회 ‘장애공감페스티벌’ 개최(이후 매년 개최)

4 장애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활용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교육실적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운영

구분	주요 기능	비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이하 "실적관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 법정 의무기관 실적 입력 및 관리 • 표준(정규)자료 및 추천 콘텐츠 찾기 • 전문강사·지정기관 교육의뢰 등 	www.able-edu.or.kr/main.do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러닝센터 (이하 "이러닝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이수증 발급 등 	www.able-edu.or.kr/elearning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기관 전용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강사·지정기관 모집 및 관리 • 교육의뢰서 확인 및 실적보고서 등록 등 	www.able-edu.or.kr/expert

2 추진 체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주체별 역할

구분	주체	역할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식개선교육 제도 운영 총괄
사업전담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사업 수행 • 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사후조치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공표 등) •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지원 • 장애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등

3 법적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5조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5		
교육 실시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의 장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기관유형 및 교육대상	유형A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기관장, 고위직, 소속 직원
	유형B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교(원)	기관장, 고위직, 소속 직원, 학생
	유형C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장, 소속 직원, 원생(유아)
교육내용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교육방법	• 집합 교육,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으로 운영 ※ 단, 직군과 인원에 상관없이 방법적으로 대면교육 1회 이상 실시(필수)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 교육대상별 기준: 유아(20분), 초등(40분), 중등(45분), 고등(50분), 성인(60분)		
교육실시기간	• 당해 연도 1월 ~ 12월		
실적제출기간	• 당해 연도 9월 ~ 차년도 2월 말		
후속조치	• 부진기관 선정 및 통보,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언론 공표 등		

4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 의무대상 기관 기준

[1] 유형A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 국가기관*
 - 대한민국 정부조직으로서 입법조직·사법조직·헌법조직·국가조직
 - *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 지방자치단체
 - 자치행정구역(광역시, 시(도)·군·구)
 - 자치행정조직(지방의회,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기타)
 - 교육행정조직(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자체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법인을 설립·경영하는 지방공기업(직영기업, 출자출연기관 제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6개 기관
 - *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2] 유형B - 각 급 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기술대학, 대학원,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각종학교
 - * 타 법령(평생교육법, 특별법 등)에 의해 설치된 대학, 대학원은 제외.

[3] 유형C - 어린이집,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 * 2026년 10월 ~ 12월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2026년 교육 실적 제출 자율
-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 국립 유치원,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유형(A)>

1 국가기관

- 행정안전부의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기준으로 상급기관(1차)과 하급기관(2, 3, 4차)으로 분류
 - ※ 기관별 제출단위(1~4차)는 상급기관의 운영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입법기관) 국회 조직, 국회사무처, 상임위원회
 - ☞ [예시] 상급기관(국회사무처), 하급기관(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 (행정부) 국가행정조직, 중앙행정기관, 산하 위원회 및 본부
 - ☞ [예시] 상급기관(보건복지부), 하급기관(국립○○센터, 국립○○병원 등)
- (법원, 헌법재판소)
 - ☞ [예시] 상급기관(대법원, 헌법재판소), 하급기관(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등)
- (선거관리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예시] 상급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급기관(○○시·도선거관리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 자치행정구역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기준 광역자치단체(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행정시로 분류
 - ★ (일괄취합제출) 읍·면·동의 실적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일괄 취합하여 실적 제출
 - ★ (일괄취합제출)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적은 시에서 일괄 취합하여 실적 제출
- 자치행정조직
 - 행정안전부의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및 ‘지방의회 현황’ 기준 자치행정조직으로 광역의회(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 기초의회(시, 군, 자치구)로 분류
 - 행정안전부의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및 ‘소방청 통계연보’ 기준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기타(대응단, 체험관 등)로 분류

○ 교육행정조직

- 행정안전부의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및 교육청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현황’ 기준 시·도 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으로 분류
- ★ (일괄취합제출) 분원, 도서관, 수련원의 실적은 상급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3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내 ‘공공기관 지정 현황보도자료’ 기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
- ★ (일괄취합제출) 산하 지역조직(지역본부, 지부, 센터)의 실적은 중앙(본부)단위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 ☞ 그 외 부설기관 교육실시는 자율이며, 「실적관리시스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4 지방공사 및 공단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현황’ 기준 광역·기초(간접: 공사, 공단)로 분류
- ☞ 직영기관(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자동차 운송) 및 출자·출연기관은 교육실시는 자율이며, 「실적관리 시스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5 특수법인

-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기관 기준으로 분류
- ☞ 특수법인에 해당되는 기관명(6개소):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2 각 급 학교 <유형(B)>

-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교육부 학교알리미 홈페이지 내 ‘학교 현황’ 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로 분류
 - ★ (일괄취합제출) 병설유치원, 분교, 부설 등의 실적은 본교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 (대학교) 교육부 대학알리미 내 ‘학교 개황 리스트’를 아래 4개 기준으로 분류
 - 1) 학교구분 :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 2) 본분교 : 본교, 분교
 - 3) 법령 : 고등교육법
 - 4) 학교상태 : 기존, 신설, 학교명 변경
 - ★ (일괄취합제출) 제2, 3, 4캠퍼스의 실적은 본교(분교)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 ☞ 타법령(평생교육법, 특별법 등)을 기준하는 국가, 공공 외 대학교는 「실적관리시스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교육실시는 자율이며, 「실적관리시스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3 어린이집, 유치원 <유형(C)>

-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내 ‘어린이집 기본정보’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으로 분류

- (유치원) 교육부 유치원 알리미 홈페이지 내 ‘일반 현황’ 기준 국립유치원, 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분류
 - ★ (일괄취합제출) 병설유치원, 분교, 부설 등의 실적은 본교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4 법정의무대상기관 기준표

구분	기관유형	기관별 조회 경로	
유형A	국가기관	(대한민국 정부) www.korea.kr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www.code.go.kr • 코드검색 > 기관코드 검색 > 기관명 검색(3차 단위까지 분류)	
	지방 자치 단체	공통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www.code.go.kr • 코드검색 > 기관코드 검색 > 기관명 검색(3차 단위까지 분류)
		행정	(행정안전부) www.mois.go.kr • 업무안내 > 자치혁신실 > 지방자치제도 >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소방	(소방청) nfa.go.kr • 정보공개 > 통계정보 > 주요통계 > 소방청 통계연보 > 조회
	교육	(교육부) www.moe.go.kr • 정책 > 지방교육자치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현황 > 조회 • 교육부 소개 > 일반현황 > 시·도교육청 > 홈페이지(이동 후 확인)	
	공공기관	(알리오) www.alio.go.kr • 알리오 안내 > 공공기관 현황 정보 > 공공기관 지정현황 보도자료 다운로드 > 조회	
	지방공사 및 공단	(클린아이) www.cleaneye.go.kr • 클린아이소개 > 지방공공기관현황 > 지방공기업 설립현황 > 조회	
특수법인	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총 6개 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유형B	초·중·고등학교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특수학교	• 알리미 소식 > 공개용 데이터 > 학사/학생 선택 > 학교 현황 > 공시년도/학교급/시·도교육청 선택 > 조회	
	각종학교		
대학교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 게시판 > 자료실 > 학교 개황 리스트 > 조회 (교육부) www.moe.go.kr • 정책 > 교육 통계 및 정보화 > 교육통계연보		
유형C	어린이집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info.childcare.go.kr • 보육정보공개API > OPEN API > 어린이집 기본정보 > 기준연월/ 어린이집지역 선택 > 조회	
	유치원	(유치원 알리미) e-childschoolinfo.moe.go.kr • 자료실 > 공시자료 다운로드 > 시/도, 공시차수 공시항목(일반 현황) 선택 > 조회	



제2장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실적제출

-
1. 교육 실시 운영 방향
 2. 기관유형별 실적배점표
 3. 교육 실시 세부 이행사항(1, 2, 3, 4단계)
 4. 후속 조치
 5. 기타사항
-

제2장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실적제출 목차

1. 교육 실시 운영 방향 -----	15
1) 교육대상 및 시간-----	15
2) 교육내용 및 방법-----	15
3) 교육 실시 및 실적 제출-----	16
4) 교육실적 점검 및 후속조치-----	17
2. 기관유형별 실적배점표 -----	18
1)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유형(A)>-----	18
2)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유형(B)>-----	19
3)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유형(C)>-----	20
3. 교육 실시 세부 이행사항(1, 2, 3, 4단계) -----	21
1) (1단계) 교육계획 수립-----	21
2) (2단계) 교육 참여-----	21
3) (3단계) 교육 방법 및 활용-----	22
4) (4단계) 교육가점-----	25
4. 후속 조치 -----	26
1) 후속 조치 세부일정-----	26
2) 교육실적 점검 및 부진기관 선정-----	26
3) 부진기관 대상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27
4) 교육실적 최종결과 언론 공표-----	27
5. 기타사항 -----	28
1) 부실교육 주의 안내-----	28
2) 교육 관련 허위 홍보·안내 전화 대응-----	28

제2장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실적제출

1 교육 실시 운영 방향

1 교육대상 및 시간

- (교육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별법인, 각 급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의 **기관장 및 소속 직원***, **학생****

* 직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공무원은 교육대상에 모두 포함. 단, 기관 소속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않은 직원, 자원봉사자, 초단시간(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중도 퇴사자, 휴직자, 파견직 근로자는 제외함.

** 학생: 소속 학생은 교육대상에 모두 포함. 단, 만 3세 미만 영아는 제외함.

- (교육 시간)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 교육대상별 기준: 유아(20분), 초등(40분), 중등(45분), 고등(50분), 성인(60분)

2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 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근거

-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 (교육 방법) 대면교육 및 비대면교육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관 여건에 따라 다양한 교육방식을 병행하여 실시

※ 단, 직군과 인원에 상관없이 **대면교육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

- (대면교육) 전문강사·지정기관 및 외부 일반강사 초빙, 내부직원 전달 교육, 문화예술 특화형 프로그램 등 강사와 교육대상자 간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
 - (비대면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러닝센터, 온라인 원격교육센터 등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육
- ※ 교육자료의 단순 배포·게시 또는 시청각자료의 단순 집합 시청은 비대면 교육에 해당

3 교육실시 및 실적 제출

- (교육 실시) 2026. 1. 1. ~ 2026. 12. 31.
 -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내에 교육 실시
- (실적 제출) 2026. 9. 1. ~ 2027. 2. 28.
 - 교육실시 결과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이하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 *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 (일괄취합제출 적용대상 및 유의사항)
 - 기관유형별 상급기관 관할의 하급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각 유형별 실적제출단위 확인 후 실적제출 진행
 - 하급기관의 실적 누락 또는 확인이 불가한 경우, 차년도부터 해당 하급기관개별 단위로 제출 조치

〈상급기관 관할 하급기관의 실적제출 기준〉

기관구성	실적제출 주체 및 유의사항
[상급기관] ○○시·군·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제출 수행주체] 상급기관(○○시·군·구청) • [실적제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관리시스템 실적입력 2단계(교육 참여인원), 3단계(교육 실시방법)에서 하급기관(○○읍·면·동센터)의 세부내용을 추가 등록 - 실적입력 필수정보: 하급기관명, 소속, 참여인원 등 - 증빙자료: 교육 참여자 명단 등 제5장 60-63p 활용 및 기관 자체양식 사용
[하급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하급기관 별 대면교육 최소 실시기준(1회 이상)은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 (일괄취합제출 대상기관)

- 지방자치단체(행정구역) 중
 - ☞ 읍·면·동의 실적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일괄 취합하여 실적 제출
 - ☞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적은 시에서 일괄 취합하여 실적 제출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중
 - ☞ 분원, 도서관, 수련원의 실적은 상급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 공공기관 중
 - ☞ 산하 지역조직(지역본부, 지부 등)의 실적은 중앙(본부)단위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 각 급 학교 중
 - ☞ 병설유치원, 분교, 부설 등의 실적은 본교에서 일괄 취합하여 제출
- 대학(원) 중
 - ☞ 제 2, 3, 4캠퍼스의 경우 본교에서 실적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

4 교육실적 점검 및 후속조치

- (교육실적 점검 및 보완) 2027. 3. ~ 6.
 - 기관별 제출한 교육 실시 결과를 ‘실적배점표’에 의거 내·외부의 점검 실시
 - 기가입 대상 실적 누락, 오입력 등 보완 실시
- (부진기관 안내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2027. 7. ~ 8.
 - 교육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부진기관 안내
 - 부진기관 기준에 의거, 관리자 특별교육 대상기관 통보 및 교육 실시
- (교육실적 결과 공표) 2027. 9.(예정)
 - 교육실적 최종 결과(부진기관 현황, 교육 이수율, 주요 교육 방법, 참여율 등)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및 언론 공표
 - ※ 2년 연속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여부 상관없이 언론공표

2 기관유형별 실적배점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
〈유형(A)〉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유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세부내용	점수	
계획 수립(10)	연간 교육 계획 수립		10	수립	10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 참여	기관장	10	참여	10	
				미참여	0	
		고위직	10	75% 이상	10	
				60% 이상 ~ 75% 미만	8	
				50% 이상 ~ 60% 미만	6	
				50% 미만	0	
	직원	40	75% 이상	40		
			60% 이상 ~ 75% 미만	30		
			50% 이상 ~ 60% 미만	20		
			50% 미만	10		
	교육 방법 및 활용 제2장 22p 참고		30	대면 교육	1. 전문강사*, 지정기관**, 문화예술 특화형 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 전문강사 **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선정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수행기관	30
					2. 일반강사	20
비대면 교육				3. 내부직원	15	
				4. 표준(정규) 자료 활용	15	
				5. 일반 자료 활용	10	
가점 (10)	대면교육 참여	5	50% 이상	5		
			30% 이상 ~ 50% 미만	4		
			10% 이상 ~ 30% 미만	3		
	기관 내부제도 마련	2	기관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필수화 제도 마련 (내부규정 제도화, 기관 정관·약관 반영 등)	2		
	장애당사자 강사 활용	2	장애당사자 교육 강사 활용	2		
기관 미소속자 교육	1	기관 미소속자 대상 교육 실시 (지역주민 대상 교육 실시 등)	1			
합계			100점 (가점 시 110점)			

부진기관 기준

- 당해 연도 교육 실적 미제출,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 대면 교육 미실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 〈유형(B)〉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

유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세부내용	점수	
계획 수립(10)	연간 교육 계획 수립	10	수립	10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 참여	기관장	참여	10	
			미참여	0	
			고위직	75% 이상	10
				60% 이상 ~ 75% 미만	8
		50% 이상 ~ 60% 미만		6	
		직원	50% 미만	0	
			75% 이상	20	
			60% 이상 ~ 75% 미만	15	
			50% 이상 ~ 60% 미만	10	
		학생	50% 미만	5	
			75% 이상	20	
			60% 이상 ~ 75% 미만	15	
	50% 이상 ~ 60% 미만		10		
	교육 방법 및 활용 제2장 22p 참고	30	대면 교육	1. 전문강사*, 지정기관**, 문화예술 특화형 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 전문강사 **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선정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수행기관	30
				2. 일반강사	20
			비대면 교육	3. 내부직원	15
3-1. 특수교사,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장애분야 교원				30	
4. 표준(정규) 자료 활용				15	
5. 일반 자료 활용	10				
가점 (10)	대면교육 참여	5	50% 이상	5	
			30% 이상 ~ 50% 미만	4	
			10% 이상 ~ 30% 미만	3	
	기관 내부제도 마련	2	2	기관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필수화 제도 마련 (내부규정 제도화, 기관 정관·약관 반영 등)	
	장애당사자 강사 활용	2	2	장애당사자 교육 강사 활용	
기관 미소속자 교육	1	1	기관 미소속자 대상 교육 실시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등)		
합계			100점 (가점 시 110점)		

부진기관 기준

- 당해 연도 교육 실적 미제출,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 대면 교육 미실시

제2장
교육 실시 및 실적제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배점표 〈유형(C)〉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유치원)

유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세부내용	점수	
계획 수립(10)	연간 교육 계획 수립		10	수립	10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 참여	기관장	10	참여	10	
				미참여	0	
		직원	25	75% 이상	25	
				60% 이상 ~ 75% 미만	20	
				50% 이상 ~ 60% 미만	15	
				50% 미만	10	
	학생(원생)	25	75% 이상	25		
			60% 이상 ~ 75% 미만	20		
			50% 이상 ~ 60% 미만	15		
			50% 미만	10		
	교육 방법 및 활용 제2장 22p 참고		30	대면 교육	1. 전문강사*, 자정기관**, 문화예술 특화형 수행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위촉 전문강사 **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선정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수행기관	30
					2. 일반강사	20
				비대면 교육	3. 내부직원	15
					3-1. 특수교사,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장애분야 교원	30
4. 표준(정규) 자료 활용					15	
5. 일반 자료 활용				10		
가점 (10)	대면교육 참여		5	50% 이상	5	
				30% 이상 ~ 50% 미만	4	
				10% 이상 ~ 30% 미만	3	
	기관 내부제도 마련	2	기관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필수화 제도 마련 (내부규정 제도화, 기관 정관·약관 반영 등)	2		
	장애당사자 강사 활용	2	장애당사자 교육 강사 활용	2		
기관 미소속자 교육	1	기관 미소속자 대상 교육 실시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 등)	1			
합계			100점 (가점 시 110점)			

부진기관 기준

- 당해 연도 교육 실적 미제출,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 대면 교육 미실시

3 교육 실시 세부 이행사항(1, 2, 3, 4단계)

1 (1단계) 교육계획 수립

○ **연간 교육계획 수립(0~10점)**

- (교육 계획) 충실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수행을 위해 연간 교육 기본 계획을 구체적(일자, 대상, 교육방법, 소요예산 등)으로 수립하여야 함.
- 계획서 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대면교육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 [참고] 교육 세부운영 계획서 양식 **제5장 59p 참고** ※ 기관 자체 양식 활용가능

2 (2단계) 교육 참여

○ **직군별 교육 실시 참여(10~60점)**

※ 교육대상 인원은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관에 소속된 총 인원으로 산정

- (기관장 참여) 참여 10점 / 미참여 0점

※ 기관장 변동 시, 시기(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에 따라 추가 실시 필요

- (고위직 참여) 참여 10점(75% 이상 만점) / 0점(50% 미만 최하점)

※ 고위직의 기준은 각 기관의 조직·직급체계를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여 적용

고위직 기준 예시

- 부기관장, 부시장, 부교육감, 부총장, 교감,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차관, 실장, 국장 등 공무원 직급 5급 이상), 국회의원, 지방(광역·기초)의원, 사무국장, 사무과장, 임원급(부정), 전임교원, 부서장 등

기관유형	고위직 분류 (예시)
국가기관	부기관장,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 등 (예 : 차관, 실장, 사무국장, 정책관, 사무과장, 경정, 대위 등)
지방자치단체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실장, 국장, 과장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부기관장, 본부장, 임원급(예: 실장, 부장 등)
각 급 학교	교감, 부기관장(부총장), 부장교사, 실장, 처장, 전임교원(교수) 등

- (직원 참여) 참여 최고 20~40점(75% 이상 만점) / 5~10점(50% 미만 최하점)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공무원은 교육대상에 모두 포함. 단, 기관 소속 고용보험을 취득하지 않은 직원, 자원봉사자, 초단시간(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중도 퇴사자, 휴직자, 파견직 근로자는 제외함.

- (학생 참여) 참여 20~40점(75% 이상 만점) / 5~10점(50% 미만 최하점)

※ 소속 학생은 교육대상에 모두 포함. 단, 만 3세 미만 영아는 제외함.

3 (3단계) 교육 방법 및 활용

○ 교육 방법 결정하기(10~30점)

교육 방법 세부내용

평가항목	내용		배점
교육 방법 및 활용(30)	대면교육 (강사를 통한 양방향 소통 교육)	① 전문강사, 지정기관, 문화예술 특화형 수행기관	30
		② 일반강사	20
		③ 내부직원	15
	비대면교육 (단순 시청각 교육)	③-1 특수교사,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장애분야 교원	30
		④ 표준(정규) 자료 활용	15
	⑤ 일반 자료 활용	10	

〈대면 교육〉

① 전문강사, 지정기관, 문화예술 특화형 수행기관 교육(30점)

※ 단, 교육명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30점 인정

- (전문강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위촉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
- (지정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의한 교육
- (문화예술 특화형 수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선정한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수행기관에 의한 교육

☞ [참고] 전문강사, 지정기관 의뢰 제3장 35p 참고, 문화예술 특화형 수행기관 의뢰 제4장 43p 참고

② 일반강사 교육(20점)

- ①의 전문강사, 지정기관, 문화예술 특화형 수행기관이 아닌 모든 외부 일반 강사 (장애인단체, 복지관, 타 공공기관, 민간교육업체 등)에 의한 교육

③ 내부직원 교육(15점)

- 특정 강사 자격(전문 또는 일반)이 없는 기관의 내부직원에게 의한 교육

③-1 특수교사,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장애분야 교원 교육(30점)

- ※ 단, 자신이 속한 기관 내 학생(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만 인정
- 학교 내 특수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
- 어린이집 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
- 대학 내 장애분야 관련 전공 교수, 또는 장애학생지원센터장(경력 3년 이상)

<비대면 교육>

④ 표준(정규) 자료 활용 교육(15점)

- 교육자료 활용 안내표(제2장 24p 참고)의 표준(정규)자료 시청

⑤ 일반 자료 활용 교육(10점)

- 교육자료 활용 안내표(제2장 24p 참고)의 일반자료 시청

(필독!) 대면교육 실시 및 결과제출 유의사항

- ※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 실적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하급기관별 기관 정보(기관명, 소속, 인원 등)와 대면교육 실시 사항(날짜, 시간, 인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증빙 서류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하급기관 실적 누락 및 확인 불가 시, 차년도부터 해당 하급기관 개별단위 제출로 변경조치
- ※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화상교육(ZOOM, 구루미 등)은 대면교육으로 인정
- ※ **교육자료의 단순 배포·게시 또는 시청각자료의 단순 집합시청은 대면교육으로 인정 불가** 단, 교육자료를 활용한 추가 학습활동(소감문 작성, 토론 등)이 진행되고, 참석자 명단 및 활동 확인자료(사진 등)를 포함하여 결과보고가 이루어진 경우 대면교육으로 인정 가능
- ※ 교육위탁 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한 경우라도 계획서 및 결과보고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각 급 학교(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의 경우 **학생 대상 교육은 참여자명부·서명 등이 아닌 교육계획서를 증빙자료로 같음하여 결과제출 가능**
 - 단, 교직원, 근로자 등 직원(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은 참여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명부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교육자료 활용 안내표

• 표준(정규)자료

구분		내용	
표준 (정규) 자료	표준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제작한 표준(정규)자료 ※ 한국장애인개발원(www.koddi.or.kr) > 자료실 > 교육자료 > 인식개선 ※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 교육자료 > 내부콘텐츠	
		콘텐츠 목록	대표 콘텐츠 ①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② 깨닫다, 알다, 장애인식개선교육(깨.알.장.인.) ③ 발달장애 바른공감(통통, 다름의 새로고침) ④ 달달한 우리 사이 ⑤ 그 외 실적관리시스템 교육자료(내부콘텐츠)에 탑재된 콘텐츠
	추천 콘텐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선정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추천콘텐츠 ※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 교육자료 > 추천콘텐츠	
기타 자료	교육부에서 개발한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콘텐츠 (예시: 대한민국 1교시, 장애이해교육드라마 등)		

• 온라인 콘텐츠 공동활용(LMS)

※ 신청방법: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 교육자료 > 콘텐츠 공동활용 신청 > 신청서 작성

• 표준(정규)자료 원격 교육센터

사이트 목록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러닝센터	www.able-edu.or.kr/elearning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e-learning.nhi.go.kr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www.neti.go.kr
(대국민)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www.gseek.kr
(대국민)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대국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플랫폼	edu.kohi.or.kr

※ 각 사이트 별 탑재된 교육과정(표준자료 콘텐츠) 수는 서로 다름

• 일반자료

구분	내용
일반 자료	표준(정규)자료가 아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는 교육내용을 포함한 동영상 등 모든 교육자료(장애인권, 장애학대예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등)

4 (4단계) 교육가점

- **대면교육 참여율(3~5점)**
 -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교육 참여율에 따라 가점 부여

대면교육 참여 가점 기준

구분	내용	가점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교육 참여율	50% 이상	5점
	30% 이상 ~ 50% 미만	4점
	10% 이상 ~ 30% 미만	3점
	10% 미만	0점

※ 대면교육 참여율 = (대면교육 참여 인원 ÷ 기관 전체 교육대상 인원) × 100
(기관 전체 교육대상 인원 중 대면교육에 실제 참여한 인원의 비율)

제2장
교육 실시 및 실적제출

- **법정의무대상 기관 내부제도 마련(2점)**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필수화를 위한 기관 내부적인 지침 및 규정, 학칙, 교육과정 편성 등 제도를 마련하거나 확대 적용
 - ※ 증빙자료: 전·후 자료 비교 제출
- **장애당사자 강사 교육(2점)**
 - 장애당사자* 강사가 교육 실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 증빙자료: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등(성명, 장애유형 외 개인정보 삭제) 제출 필수
- **교육기관 미소속자 교육 실시(1점)**
 - 기관 소속 직원 외 학부모, 지역주민 등 미소속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

4 후속 조치

1 후속 조치 세부일정

- (적용기준)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및 실적 점검결과
- (추진일정) 2027년 6월~9월 후속조치 시행
 - ※ 부진기관 언론공표 대상은 실적점검 결과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음.
- (추진절차)

실적마감 및 점검 (2027년 3월~6월)	• 2026년 교육실적 제출 마감 후 세부점검
부진기관 선정 (2027년 6월)	• 2026년 교육실적 미제출 및 오입력 기관 • 실적배점표 합계 70점 미만 기관 • 대면교육 미실시 기관
관리자 특별교육 진행 (2027년 7월~8월)	• 부진기관 관리자 대상 특별교육 안내 및 실시 ※ 2년 연속 부진기관은 교육참여 여부 관계없이 공표
언론 등 공표 (2027년 9월)	•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

※ 세부일정은 추진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교육실적 점검 및 부진기관 선정

- 실적 제출 기간 내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제출된 교육실적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교육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
 - ※ 점검결과에 따라 실적배점표의 각 항목별 점수는 변경(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음.
- 부진기관 기준: 실적 미입력(오입력), 실적배점 70점 미만, 대면교육 미실시

교육실적 점검 기준	
단계	점검내용
1단계 교육계획	- 증빙자료 열람 불가 -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누락
2·3단계 교육 참여 및 방법	- 교육 참여인원 및 증빙자료 확인 불가 - 대면 및 비대면 교육 등 오선택 또는 교육 방법 확인 불가 - 표준(정규) 및 일반자료 구분 불가 - 강사자격 확인 불가
4단계 교육가점	- 가점항목별 증빙자료 미흡 또는 확인 불가

3 부진기관 대상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부진기관 대상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결과제출
 - ※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세부사항은 별도 공문안내(예정)
- 기관 유형별 실시간 영상교육* 또는 이러닝센터 내 특별교육과정 참여
 - * 구루미, Zoom 등의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관리자 기준 ※ 기관별 자체 기준대로 관리자 구분 가능

• (기준) 장애인식개선교육 업무 총괄자, 명칭 불문 아래 지위에 준하는 자

기관유형		관리자 분류(예시)
기관유형 A	국가기관, 지자체 및 교육청	교육 관련 부서 내 과장급 이상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교육 관련 부서의 장
기관유형 B, C	초·중·고교, 특수·각종학교, 대학(원)	교감, 교무부장, 학생처장, 교무처장급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또는 원감

제2장
교육 실시 및 실적제출

4 교육실적 최종결과 언론 공표

- 교육실적 최종결과(부진기관 현황, 교육 이수율, 주요 교육 방법, 참여율 등)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및 언론 공표
 - ※ 2년 연속 부진기관은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여부 상관없이 언론 공표

5 기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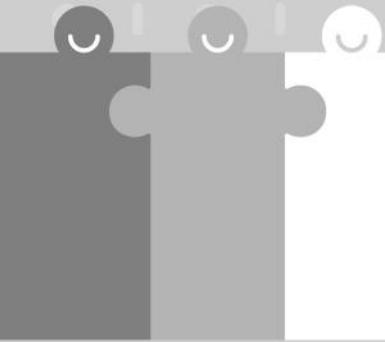
1 부실교육 주의 안내

- **(부실교육 주의 필요)** 일부 민간기관 등에서 ‘금융상품 판촉 등 영업*’과 연계한 ‘무료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교육취지를 훼손하거나 교육내용이 부실할 우려가 높으니 전문강사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교육 운영 권장
* 금융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된 무료교육은 정상교육으로서 인정 불가
- **(소속·산하기관 실적 관리 철저)** 상급기관(각 부처, 공공기관, 시·군·구 등)은 하급기관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실시 여부 관리 및 독려 요망

2 교육 관련 허위 홍보·안내 전화 대응

- **(공문 안내 확인 필수)** 연도별 교육실적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리자’만이 상세조회가 가능하며, 실적을 미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발송되는 공문을 통해서 안내됨(개별 기관 대상 교육실시를 강요하는 협박성 전화연락을 절대로 하지 않음.)
- **(무료교육 강제화 제한)** 민간 교육업체에서 특히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허위 내용을 알리고 업체의 무료 교육 이수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교육실적이 등록되지 않아 교육을 받아야 한다’, ‘30일 이내 교육결과를 제출하지 않아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교육을 받았지만 지정된 기관에게 받지 않아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등의 허위 내용 고지

(주의) 위와 같은 유사 사례의 홍보 전화로 교육을 받고 상품의 홍보를 받으신 경우 해당 업체명과 발신전화번호, 허위 홍보·안내 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통합콜센터(☎1522-0495) 또는 실적관리 시스템(www.able-edu.or.kr) 내 Q&A게시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전문강사 및 지정기관

-
1. 전문강사 양성 및 운영
 2.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3. 전문강사 및 지정기관 활용
-

제3장 전문강사 및 지정기관 목차

1. 전문강사 양성 및 운영	31
1) 전문강사 자격	31
2) 전문강사 양성	31
3) 보수교육 및 유예제도	31
4) 전문강사 관리	32
2.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32
1) 지정기관 자격 및 역할	32
2) 지정 절차 및 기준	33
3) 지정 변경	34
4) 지정 취소	34
5) 점검 및 평가	34
3. 전문강사 및 지정기관 활용	35
1) 전문강사 및 지정기관 현황	35
2) 교육의뢰 및 활용	35

제3장 ◉ 전문강사 및 지정기관

1 전문강사 양성 및 운영

1 전문강사 자격

- (강사자격)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위촉한 자격이 유효한 자
-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제2호

2 전문강사 양성

- (양성과정)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매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모집사항, 신청서류, 선정기준, 교육일정 등 주요내용은 별도 공지*함.
*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및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기관전용시스템에 공지
- (교육내용)
 - 전문강사 기본 소양 및 자질 함양
 - 영역별 전문지식 함양(「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항 교육내용 중심)
 - 교수역량 기술 개발(대상자별 특성 이해 및 교수법, 교육현장 사례공유 등)
- (위촉기준)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위촉심사 점수 80점 이상인 자
- (위촉기간) 전문강사 자격유효기간은 2년이며, 보수교육을 통해 재위촉 가능
☞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 미이수 시 전문강사 자격 소멸

3 보수교육 및 유예제도

- (보수교육)
 - 전문강사 위촉 1년이 지난 시점에 보수교육 과정 이수 시 심사를 통해 재위촉*
 - * 재위촉기간: 2년
 - (참여자격) 전문강사 위촉기간 만료 전 재위촉 희망자 중,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의실적이 위촉기간 연도별 최소 2회 이상인 자
 - (재위촉 기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재위촉 심사점수 80점 이상인자

○ (보수교육 유예)

- 전문강사 유효기간 만료 전 보수교육 이수가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수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 유예인정 심사를 통해 유예* 가능

* 유예사항: 전문강사 위촉기간 1년 갱신, 차년도 보수교육 참여대상 인정

○ (유예신청 자격) 유예인정 사유 다음의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 해외출장, 장기파견 등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업무상의 사유
- 임신, 출산, 해외유학,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개인적인 사유
- 기타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인정하는 사유

○ (유예인정 기준)

-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의 유예신청 승인을 득한 후, 유예인정 심사 점수 80점 이상인 자

4 전문강사 관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강사에 위촉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촉을 취소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

- 강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 홍보 등 상업적 목적과 연계된 강의활동을 한 자
- 허위 실적제출 및 위조, 위장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교육활동 청렴을 위배한 자
- 부적절한 언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강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전문강사로 활동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자

2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1 지정기관 자격 및 역할

- (기관자격)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공고'에 신청한 기관 중 지정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 (이하 "지정기관")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4제4호~5호,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2조의4

○ (주요역할)

-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 장애인식개선교육제도 홍보 및 의무교육 대상기관 모집
-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소속의 전문 및 소속강사 역량강화
-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안 및 콘텐츠 다양화와 품질개선
- 장애인식개선교육 만족도조사 실시 및 환류
-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모니터링 점검 및 개선권고 성실 이행
- 기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2 지정 절차 및 기준

○ (지정계획 공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함.

○ (신청자격) 전문강사(한국장애인개발원장 위촉)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아래의 자격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한 곳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역량을 갖춘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사업내용 또는 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인식개선교육 수행에 적합한 인프라(인력, 기자재, 교재 등)를 갖춘 곳

○ (지정절차) 지정계획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후, 자격요건 검토 및 지정심사*를 거쳐 선정



* 지정심사 평가기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홈페이지 참고

○ (지정공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

3 지정 변경

○ (지정변경) 지정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 신청

- 재발급 사유: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재발급 신청: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재발급 필요서류(재발급 신청서*, 증명서류 등) 제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 서식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4 지정 취소

○ (취소사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

- 전문강사를 확보하겠다고 하였으나, 해당 기간까지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어 이를 토대로 지정받은 경우 등

○ (취소절차) 장애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취소 사안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 실시



5 점검 및 평가

○ (기관점검) 지정기관의 지정현황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

* 지정 자격요건 및 정보관리, 법정 교육실시 기준 준수, 교육실시 자료 보관 및 관리, 전문강사 보유, 사업계획 이행의 적정성 등

○ (기관평가) 지정기관의 연간 운영 결과 보고에 따른 평가

☞ 우수기관 선정 등

3 전문강사 및 지정기관 활용

1 전문강사 및 지정기관 현황

- 전문강사 및 지정기관을 통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한 경우, 실적배점 중 ‘교육방법 및 활용’ 항목의 30점(만점)을 인정
 - (전문강사 현황) 2026년 2월 기준 총 270명
 - (지정기관 현황) 2026년 2월 기준 총 36개소 제5장 51p 참고
-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교육의뢰 메뉴를 통해 정보 확인

2 교육의뢰 및 활용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을 통해 전문강사·지정기관 조회 후 교육의뢰 및 결과등록



- (교육의뢰) 전문강사·지정기관 정보를 확인한 후, 교육 내용 및 일정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 교육의뢰 진행
 - 교육의뢰서 제출 전 교육내용, 일정, 강사료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 필요
 - 강사료는 의뢰기관 내부 지침에 따라 전문강사·지정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실적관리시스템> 교육의뢰> 전문강사·지정기관 정보 검색하여 교육의뢰 신청
- (실적입력) 대면교육 실시 후 실적관리시스템에 증빙자료 등록 및 결과제출
 - 전문강사·지정기관에서 교육결과를 등록하면 의뢰기관 실적관리 메뉴로 자동 연계
 - 의뢰기관은 실적관리에서 교육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결과제출

*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정상 실적으로 최종 인정됨

☞ 실적관리시스템> 실적관리> 실적입력 및 수정> 단계별 정보 입력 메뉴에서 증빙자료 첨부

제3장
전문강사 및 지정기관



제4장 장애인식개선교육 자주 묻는 질문

-
1. 교육 대상
 2. 교육실시 및 방법
 3. 실적 제출 및 인정사항
 4. 실적관리시스템
-

장애인식개선교육 자주 묻는 질문 목차

1. 교육 대상	39
Q1. 교육대상 전체인원 산정기준	39
Q2. 교육 제외 대상	39
Q3. 대학교의 교육대상	39
Q4. 장애인 근로자 및 학생이 없는 기관의 교육 실시	40
Q5.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교육대상	40
Q6.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교육 실시	40
2. 교육실시 및 방법	41
Q7.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차이	41
Q8. 학교의 학기운영 중 교육 실시 기간	41
Q9. 과태료 부과 여부	41
Q10. 기관 자체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사용 관련	41
Q11. 대면교육 실시 방법	42
Q12. 대면교육 실시 인원	42
Q13. 전문강사 강의 의뢰 방법	42
Q14. 지정기관 강의 의뢰 방법	42
Q15. 문화예술 특화형 수행기관 강의 의뢰 방법	43
Q16. 타 기관 제작 교육콘텐츠 활용 가능 여부	43
Q17. 특수교사 및 교원의 대면교육	43
3. 실적 제출 및 인정사항	44
Q18. 장애인식개선 관련 유사교육의 실적 인정 여부	44
Q19. 기존 교육과정 및 장애관련 수업의 실적 인정 여부	44
Q20. 병설유치원의 교육실적 입력 방법	44
Q21. 교육실적 입력 방법	44
Q22. 교육실적 증빙자료	45
Q23. 실적 미인정 사례	45
Q24. 부진기관 선정 기준	46
Q25. 부진기관 선정 시 불이익	46
4. 실적관리시스템	47
Q26. 기관의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 변경	47
Q27. 기관명 및 주소, 이메일 등 정보 변경	47
Q28. 실적등록 담당자 변경	47

제4장 ◉ 장애인식개선교육 자주 묻는 질문

1 교육 대상

Q1. 교육대상 전체인원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 교육대상 전체인원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관에 소속된 인원 총 수로 계산합니다.

단, 교육대상 전체인원 산정기준일('26.12.31.) 이전에 대면교육 1회 이상 실시하고 연간 교육을 마무리했다면, 최종적인 교육 실시일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해도 됩니다.

- * 대학교의 경우, 2026년 4월 1일 대학정보공시 기준에 준용하여 산정 가능
- 학생: 재학생 기준
 - 교직원 및 소속직원: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 체결한 고용보험 취득자

Q2. 교육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도 있나요?

A. 만 3세 미만의 영아, 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기관 소속 고용보험 미취득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공무원은 교육대상에 모두 포함됩니다.

Q3. 대학교입니다. 대학교의 직원의 경우 교육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A. 대학교의 경우 전임교수, 행정직원 등 4대보험 중 하나라도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여러 기관에 중복 가입된 대상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한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대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Q4. 저희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나 학생이 없고, 장애인을 만날 일도 없는데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A. **맞습니다.**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학교의 구성원 등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의무대상이며, 이외 기관은 권장사항입니다. 본 교육은 우리 사회 전반의 장애인식 수준 향상을 지향하므로 해당 기관에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학생이 없어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5.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입니다. 교사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어린이집·유치원의 만 3세 이상 유아와 유치원생, 고용보험을 취득한 기관장 및 교직원, 근로자 모두가 교육 대상입니다.
단, 만 3세 미만의 영아는 자율이므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Q6. 지역아동센터, 요양보호기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A. **자율입니다.** 교육의 취지가 '대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이기 때문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다만, 해당기관은 「실적관리시스템」 교육 실적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적 입력 제외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재단법인, 주식회사, 학원 등 민간 사업체



2 교육실시 및 방법

Q7.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A. 네. 두 교육은 서로 다른 법령에 의거한 **법정의무교육**으로서, 교육 목적과 내용이 상이함으로 각각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단,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제작 및 보급하고 있는 통합인식개선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Q8. 학교입니다. 아직 학기 운영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 차년도 2월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실적을 입력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교육은 당해 연도(2026년 12월 31일까지) 안에 실시하여야 하며, 실적 입력만 2027년 2월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Q9.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의 벌칙은 없으나, 향후 교육실적 점검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공표 등의 후속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10. 교육 의무대상 기관 내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표준(정규) 동영상 자료를 탑재하여 교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 교육자료 > 콘텐츠 공동활용 신청 메뉴에서 신청해주시면 최대 1주일 이내로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교육 의무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탑재 활용 불가

제4장
자주 묻는 질문

Q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언급하는 대면 교육은 어떻게 실시해야 하나요?

- A. **대면교육**은 강사와 교육생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으로 집합교육 및 온라인 화상교육 (Zoom, 구루미 등)을 교육을 포함하며, **연 1회 이상 필수로** 실시해야 합니다.
- 다만, 단순 자료 배포·게시 또는 시청각 자료의 단순 집합 시청은 대면교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12. 대면교육은 꼭 모든 직원(학생)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대면교육 최소 실시 인원은 1명 이상입니다. 다만 대면교육 참여율에 따라 가점이 차등 적용되므로, 더 많은 직원(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점항목	가점기준	가점
장애인식개선 대면교육 참여율	50% 이상	5점
	30% 이상 ~ 50% 미만	4점
	10% 이상 ~ 30% 미만	3점
	10% 미만	0점

※ 대면교육 참여율 = (대면교육 참여 인원 ÷ 기관 전체 교육대상 인원) × 100
(기관 전체 교육대상 인원 중 대면교육에 실제 참여한 인원의 비율)

Q13.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에게 강의를 의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전문강사는 실적관리시스템 > 교육의뢰 > 전문강사 의뢰 > 전문강사 정보를 확인하시고,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교육 의뢰사항 협의 후 전문강사 상세정보 상단의 [교육의뢰] 기능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교육의뢰 이용방법 제3장 35p 참고

Q14.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정기관에 강의를 의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지정기관은 실적관리시스템 > 교육의뢰 > 지정기관 의뢰 > 지정기관 정보를 확인하시고,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교육 의뢰사항 협의 후 지정기관 상세정보 상단의 [교육의뢰] 기능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교육의뢰 이용방법 제3장 35p 참고

Q15.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사업 수행기관에 대면교육을 의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문화예술 특화형 수행기관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 이용안내 > 공지사항 > '2026년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기관 현황' 을 확인하시고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Q16. 타 기관에서 제작한 교육 콘텐츠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 A. 실시해도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육내용 5가지 중 1가지 이상 포함하신다면 타 기관 교육자료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부적절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표준(정규)자료 활용을 권장합니다(15점 인정)

Q17. 특수교사 및 교원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경우, 어떤 교육방법에 해당하나요?

- A. 특수교사,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 장애분야 교육 교원,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장 (경력 3년 이상)인 자가 소속 기관의 학생(원생) 대상으로 교육할 경우, '특수교사,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장애분야 교원 교육(30점)'을 부여합니다.

다만, 해당 특수교사 및 교원이 소속 기관의 교직원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 '내부직원 교육(15점)'이며, 타 학교 학생(원생)이나 교직원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 '일반강사 교육(20점)'을 부여합니다.

3 실적 제출 및 인정사항

Q18. 장애인식개선 관련 유사교육도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장애인식개선 관련 유사교육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외의 타 법령에 의한 장애 관련 교육으로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인권교육 등을 의미합니다.

위 유사교육은 실적기준표 상 30점의 기준을 가진 전문강사·지정기관 및 문화예술 특화형 수행기관이 교육을 실시하였을지라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아니므로 대면교육 일반강사 교육(20점)으로서 인정됩니다.

Q19. 학교 교육과정에 장애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A.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육내용 5가지 중 1가지 이상을 포함하고, '장애인식개선'이라는 주제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단, 최종 실적배점은 강사자격 및 교육자료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Q20.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의 교육 실적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A. 22년도부터 병설유치원, 분교, 분원 등은 본교에서 일괄 취합한 후 실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병설유치원 실적은 본교(○○초등학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초등학교와 유치원 실적을 각각 구분하여 1~3단계별 내용을 모두 추가 등록 및 저장하시면 됩니다.

Q21. 실적입력은 한번만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면 여러 번 입력할 수 있나요?

A. 실적은 회기별로 입력하며, 교육 방법에 따라 여러 번으로 나누어 입력 가능합니다. 기관소속 전체인원 대상으로 1회 교육을 실시한 경우, 한 번만 입력해도 되지만, 교육 회차(날짜), 교육 대상, 교육방법이 다를 경우, 여러 건으로 나누어 입력해야 합니다. 3단계 교육방법 입력 화면 하단의 [교육 실시방법 등록] 탭을 클릭하여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단, 2단계 총괄 참여 실적 입력 시, 기관소속 전체인원 수를 초과하여 참여인원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Q22.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는 필수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A. 아래 내용을 모두 명시한 참석자 명단, 이수증 및 수료증 명단, 교육 관련 내부 기안, 결과 보고서 등이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증빙자료가 없는 교육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증빙자료 기재항목

※ 양식(제5장 60~63p) 활용 및 기관 자체양식 사용

① 교육 일시	② 기관소속 전체인원 및 참여인원
③ 교육내용	④ 교육 방법
⑤ 강사명 및 소속기관(강사 활용 시)	

Q23. 교육을 실시했으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에서 충실하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셨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실적 인정이 안 되니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육은 증빙자료가 확인되어야 하며, 금융상품 판촉 연계 등을 통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의] 부적합한 결과제출 사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기관 전체 대상인원(모수) 확인 불가, 교육별 참여인원 확인 불가
- 제출 증빙자료와 실적관리시스템 실적 입력 인원이 상이한 경우
- 기관장 참여 여부, 고위직 참여율 등의 증빙자료 확인 불가
- 참여율 확인 불가한 증빙자료 등

Q24. 정확한 부진기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됩니다.

- ① 실적을 미제출한 경우
- ② 실적은 제출하였으나 실적배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 ③ 1회 이상 대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④ 실적입력 시 3단계 교육결과제출 첨부파일 미제출 또는 증빙오류인 경우

[예시] 부진기관 선정사례

사례) 저희 기관은 70점도 넘었고 대면 교육도 실시했는데 왜 부진기관인가요?

- 대면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교육 실시에 대한 3단계 결과 미제출 또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 제출 시에는 부진기관으로 선정

•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

: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아닌 타 법령에 따른 교육 결과보고서, 교육과 관련이 없는 단순 사진 (사업자등록증, 풍경사진 등), 오류로 인해 열람이 안 되는 파일 등

※ [예시]부적합한 결과제출 및 부진기관 선정 사례를 참고하여 실적 불안정 및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5. 부진기관으로 선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부진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는 '관리자 특별교육'에 참여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관리자 대상 기준은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업무 총괄자이며,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 및 언론에 공표됩니다. 또한 2년 연속 부진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여부와 상관 없이 언론에 공표됩니다.



4 실적관리시스템

Q26. 기관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기관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가 변경된 경우 신규로 가입하시고, 기존 계정 삭제 요청 글을 실적관리시스템 Q&A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정 삭제는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Q27. 기관 정보(기관명, 이메일, 담당자 등)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기관명이 변경된 경우 실적관리시스템 Q&A 게시판에 정보변경 요청 글(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필수 첨부)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그 외 정보는 실적관리시스템 [마이페이지] > [기관정보] > [기관정보 수정]에서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Q28. 실적등록 담당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담당자간에 로그인 비밀번호 인수인계를 해주시고, 실적관리시스템 [마이페이지] > [기관정보] > [기관정보 수정]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비밀번호를 인수인계 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경우, [로그인] >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 하단에 있는 [비밀번호 분실신고 바로가기] 기능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유선문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통합콜센터 (☎ 1522-0495)



제5장 참고자료

-
1. 지정기관 현황
 2.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령
 3. 각종 서식
 4. 장애인식개선 브랜드·캐릭터
-

참고자료 목차

1. 지정기관 현황	51
2.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령	53
2-1.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령(시행령)	55
2-2.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령(시행규칙)	57
3. 각종 서식	59
1) 교육 세부운영 계획서	59
2) 내부기안(교육 증빙자료)	60
3) 대면교육 참여자 명단(교육 증빙자료)	61
4) 비대면교육 이수자 명단(교육 증빙자료)	62
5) 대면교육 증빙사진(교육 증빙자료)	63
6) 교육 만족도 조사지	64
7) 교육 효과 조사지(전/후)	65
4. 장애인식개선 브랜드·캐릭터	66

제5장 ◀ 참고자료

1 지정기관 현황

※ 지역별·기관명 가나다순

연번	소재지	기관명	연락처	주 교육대상	주 교육 활동 지역	홈페이지
1	서울	밀알복지재단	02-6411-3651	유아·학생·성인	서울·경기	밀알문화예술센터.kr
2	서울	보들극장	02-6052-3334	유아·학생·성인	서울·경기·인천·충청	www.bodlenara.co.kr
3	서울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1688-0750	유아·학생·성인	서울·경기	baro.sgwon.or.kr/center
4	서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02-880-0880	유아·학생·성인	서울·경기·인천	insik.siledu.org
5	서울	장애인인권센터	02-6123-4407	유아·학생·성인	서울·경기·인천·세종·전남	hcdp.or.kr
6	서울	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아트위캔	02-717-4336	학생·성인	서울·경기·인천·강원·충청·경북	www.artwecan.or.kr
7	서울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사회적협동조합	1544-6669	유아·학생·성인	서울·경기·인천·충청	www.aulim.org
8	서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유아·학생·성인	서울·경기·인천·전남·경남	www.kappd.or.kr
9	부산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부산센터	051-506-1498	유아·학생·성인	부산·울산·경남	www.bs-aulim.org
10	대구	대구광역시장애인권익협회	053-567-9981	유아, 학생, 성인	대구·경북·경남	www.dapdr.or.kr
11	대구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053-295-4240	학생	대구·경북·경남	www.saramcil.org
12	대구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53-557-0455	유아·학생·성인	대구·경북	dgcowalk.cowalk.or.kr
13	대구	한국파릇하우스	053-632-1107	유아·학생·성인	대구·부산·경북·경남	parohouse.co.kr
14	광주	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관	062-611-1925	유아·학생·성인	서울·경기	www.ngjangbok.or.kr
15	광주	비전장애인자립생활센터	062-229-1463	유아·학생·성인	서울·경기·인천·충청	www.visioncil.or.kr
16	울산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2-248-5911	유아·학생·성인	서울·경기	www.ulsanrehab.or.kr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 지역별·기관명 가나다순

연번	소재지	기관명	연락처	주 교육대상	주 교육 활동 지역	홈페이지
17	경기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070-4268-2792	유아·학생·성인	서울·경기·인천	www.gsrpd.org
18	경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031-307-7789	유아·학생·성인	서울·경기·인천· 세종·전남	www.kgppd.or.kr/kgppd
19	경기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	031-286-5177	학생·성인	서울·경기·인천· 강원·충청·경북	daolrimhr.com
20	경기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2-670-1100	유아·학생·성인	서울·경기·인천· 충청	www.pchand.or.kr
21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드림드앙상블	031-718-5458	유아·학생·성인	서울·경기·인천· 전남·경남	www.dreamwith.or.kr
22	경기	성남시장장애인권리증진센터	031-725-9507	유아·학생·성인	부산·울산·경남	sungjangin.org
23	경기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031-893-2171	유아·학생·성인	대구·경북·경남	www.hmsrehab.or.kr
24	강원	한국장애인연맹 강원DPI	033-641-4359	학생	대구·경북·경남	cafe.daum.net/dpikwon
25	충남	아산시장애인복지관	041-545-7727	유아·학생·성인	대구·경북	www.ajb.or.kr
26	충남	충청남도남부 장애인종합복지관	041-856-7071	유아·학생·성인	대구·부산·경북· 경남	www.cnnrec.or.kr
27	전북	사회적협동조합 느루걸음	063-272-9780	유아·학생·성인	광주·전남	www.nurustep.org
28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063-901-5246	유아·학생·성인	광주·전남	www.jbwc.or.kr
29	전남	사이영	061-755-0787	유아·학생·성인	울산	blog.naver.com/420art
30	경북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경북센터	054-456-6907	유아·학생·성인	경기	www.gbaulim.or.kr
31	경남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055-286-1330	유아·학생·성인	경기	www.ablecall.net
32	경남	경남장애인인권포럼	055-283-1313	유아·학생·성인	서울·경기·인천	cafe.daum.net/GNforum
33	경남	진해장애인인권센터	055-541-1330	유아·학생·성인	경기	www.jh1330.or.kr
34	경남	창원장애인인권센터	055-274-1332	학생·성인	전국	www.cwdhl.or.kr
35	제주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064-735-2600	유아·학생·성인	서울·경기	www.seogwicrc.or.kr
3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064-702-0295	유아·학생·성인	서울·경기	www.jejurehab.or.kr

2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⑨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① 제1항 및 제9항의 사업, 인식개선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 ③ 인식개선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1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령(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 대상별로 교육 시간을 단축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인식개선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3.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4.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인식개선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교육 대상인원 및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자료나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이하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된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점검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해야 한다.

제16조의3(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관리
2. 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 보급
3. 인식개선교육기관 점검 및 관리

제16조의4(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0항 및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4.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의 접수·확인 및 지정 결과의 통지
5.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2-2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령(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 1.] [보건복지부령 제1149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25조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3(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2.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정관이나 규약 등에 인식개선교육의 실시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인·비영리민간단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이하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 운영 계획서
2.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 보유 현황
3. 교육에 사용할 교육 교재
4.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식개선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1. 교육 운영 계획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2. 인력, 교재 등의 전문성 및 적정성
3.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식개선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게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2조의4(인식개선교육의 방법)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6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식개선교육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2조의5(인식개선교육기관의 전문강사) 법 제25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란 법 제25조제7항 및 영 제16조의4제2호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개발한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이 전문강사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내부기안(교육 증빙자료)

※ 아래 문서는 예시로서, 기관 내 자체 내부기안 양식의 사용을 권장함.

		
수신자 (경유)	내부결재	
제목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 보고	
<p>1. 관련근거: 장애인식개선팀-000(2026. 2. 1.)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계획”</p> <p>2. 위와 관련하여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p> <p>가. 교육명: 2026년 교직원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p> <p>나. 기 간: 2026. 00. 00.~ 00. 00.</p> <p>다. 방 법: 비대면(온라인) 교육 및 대면 교육 병행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직원 비대면(온라인) 교육 실시 - 고위직 및 신규직원 대상 대면교육 별도 실시 <p>마. 참석자: 참석 인원 180명/전체 인원 20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온라인)교육 90명(실제 참여인원: 160명, 대면교육 중복 참여자 70명 제외) - 대면 교육 90명 <p>바. 특이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관리시스템 입력 시, 2단계(총 참여 인원)에는 동일 인원을 중복 산정할 수 없으며, 3단계(회차별 교육실적)에는 중복 입력이 가능함. ※ 동일 인원이 여러 회차에 참여한 경우에도 2단계 총 참여 인원에는 1명으로만 산정함. 		
<p>붙임 1. 2026년 교육 결과보고서 1부.</p> <p>2.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참석자 서명부 1부. 끝.</p>		
대리	장애인식개선팀장	장애인식개선부장
협조자		
시행		접수
우 07236		
전화		http://www.koddi.or.kr

5 대면교육 증빙사진(교육 증빙자료)

대면교육 증빙사진			
기관명			
교육날짜	YYYY. MM. DD.	교육시간	
기관소속 전체인원		교육참여인원	
교육장소		강사명	
강의명(교육내용)			

개수제한 없음	개수제한 없음
사진 1	사진 2
개수제한 없음	개수제한 없음
사진 3	사진 4
개수제한 없음	개수제한 없음
사진 5	사진 6

※ 증빙 사진의 교육 참여자 얼굴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모자이크 처리 필수

※ 기관소속 전체인원: 기관에 소속된 총 인원 수 작성 요망

6 교육 만족도 조사지

※ 아래 문서는 예시로서, 교육내용별 적합한 만족도 조사지 양식의 사용을 권장함.

교육 만족도 조사지

강사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육내용이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다.					
2	교육내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3	학습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내용을 전달하였다.					
4	교육방법이 흥미를 유발하고, 사례나 예시 등이 적절히 사용되어 집중도를 높였다.					
5	교육생의 이해도 및 소속 기관 상황에 맞는 교육을 하였다					
6	교육 진행시 시간 배분(전달내용의 조직화, 설명, 토론)은 적절하였다.					
7	교육 보조자료를 활용하는 기술은 적절하였다.					
8	강의 방식(속도, 언어 구사, 음량, 제스처)은 적절하였다.					

강의 주제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애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2	나에게 새로운 개념과 유익한 정보들이 제공되었다.					
3	나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4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강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육 운영(일정, 교육 준비 등)이 잘 준비되었다.					
2	강의장 환경은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3	교육생 인원은 교육 효과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규모였다.					

기타	
본 교육과정 운영 사항 관련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또는 차년도 과정을 위한 제안 등을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7 교육 효과 조사지(전/후)

※ 아래 문서는 예시로서, 교육내용별 적합한 효과 조사지 양식의 사용을 권장함.

교육 효과 조사지(전/후)

교육 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애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다.					
2	장애와 관련된 올바른 언어표현에 대해 알고 있다.					
3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5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해 알고 있다.					
6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알고 있다.					
7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8	인권 침해 발생 시 대응(신고)방법을 알고 있다.					
9	나는 평소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있다.					
10	나는 평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다.					

교육 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애의 개념에 대해 더 명확히 알게 되었다.					
2	장애와 관련된 올바른 언어표현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3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더 잘 알게 되었다.					
5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6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7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는 방법을 더 잘 알게 되었다.					
8	인권 침해 발생 시 대응(신고)방법을 더 잘 알게 되었다.					
9	나는 평소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더 생겼다.					
10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4 장애인식개선 브랜드·캐릭터

<장애인식개선 브랜드>



각각의 다양한 <퍼즐>이 모여 하나의 완성된 형상을 만들 듯 서로 달라 보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같이 성장하는 희망찬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미소>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상징

<장애인식개선 캐릭터>

토끼는 빠르고 꼬리가 많다?
거북이는 느리고 성실하다?
강아지는 활발하고 뛰는 것을 좋아한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장애인’하면 떠오르는 휠체어, 흰 지팡이 등 장애인에 대한 고정화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코코’와 ‘디디’, 그리고 ‘보보’가 탄생했습니다!

진정한 ‘장애인식개선’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코코 토끼지만 느릿느릿하고 매번 당근을 선물 받지만 사실은 당근을 싫어하는 고기 덕후 집순이 코코!

직접 만든 전동 등껍질을 씹씹 타고 다니며 **디디** 불편한 환경은 스스로 해결하는 행동파 디디!



보보 코코와 디디 사이를 조율하는 중재자이자 알고 보면 가장 나이가 많은 든든한 동반자 보보!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발 행 일 2026년 3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전 화 1522-0495

팩 스 02-412-0463

홈 페이지 www.koddi.or.kr

※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